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공고

화성시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지역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보다 집중하여 [기획지원-창작활동(신작)-우수예술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은 '기획지원'과 '창작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고유의 예술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화성시 지역예술 생태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오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 1. 19.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신아

1 추진근거

-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의 2
-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조례」 제7조, 제9조
- 「화성문화예술창작 육성 활성화사업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문화예술창작·육성 활성화 사업 지원금 운영규칙」

2 공모개요

- 사업명: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 공모일정
 - 공고기간: 2023. 1. 19.(목)~1. 31.(화) (13일간) *공고일: 2023. 1. 19.(목)
 - 접수기간: 2023. 2. 1.(수)~2. 12.(일) (12일간)
 - 면접심사: 2023. 3. 8.(수)~3. 10.(금)
 - 최종발표: 2023. 3. 17.(금)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부문
- 지원내용: 2023년 신작에 대한 '기획지원' 또는 '창작활동지원'
- 지원규모: 최소 3,000천원~ 최대 20,000천원 / 총 380,000천원 지원(목표: 50건)
 - 기획지원 20건, 창작활동지원 30건 지원 목표

3 공모계획

- 지원개요
 - [기획지원]: 신규 예술 프로젝트의 창작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
 - [창작활동지원]: 신작의 창작활동 및 초연/전시/출판 지원

구분	예술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기획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단계 지원 기획, 리서치, 안무음악콘텐츠대본 개발 등	4백만원(정액)	4백만원(정액)
	시각예술	시각예술 프로젝트 위한 사전작업 지원 기획, 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3백만원(정액)	3백만원(정액)
<기획지원> 지원 선정자 성과공유 그룹전시 및 쇼케이스 참여 및 발표 필수(9/20~23)				
창작활동지원	공연예술	공연 예술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의 형태로 발표했던 작품 지원 가능 ※ 실연예술의 경우 신규 레퍼토리이면 지원 가능	개인 예술인	
			평균 6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7백만원
	예술단체		평균 1천 4백만원	최저 7백만원 최고 2천만원
	시각예술	시각 예술 창작활동 및 전시 지원 ※ 전시 작품 중 2023년도 창작 작업 포함 의무	개인 예술인	
			평균 6.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1천만원
	예술단체		평균 1천만원	최저 8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문학분야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계약 및 출간 의무 ※ 개별 작품은 기발표작품이어도 수록 가능	개인 예술인		
		3.5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4백만원	
예술단체		5백만원(평균)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계			380백만원	

-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 ※ 다른 프로젝트라도 1명의 신청자는 [기획지원] / [창작활동지원]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 첨단기술 융·복합 사업의 경우 최고 신청가능금액의 10%까지 증액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023 신규도입)
- ※ 동일한 프로젝트로는 이전에 동일한 지원항목(기획지원/창작활동지원)을 지원 받았던 경우 다음 단계의 지원만 가능함.
- ※ 지원 신청 시 '예술 프로젝트'의 전문예술/비전문예술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비전문예술'의 경우 전체 선정작의 10% 내외로 선정, 적격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3 신규도입)

<청년 예술인 지원 할당제도> 운영

예술창작지원분야의 전체 선정자 중 10%는 청년(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예술가 또는 해당 청년예술가가 대표인 단체)예술을 선정하는 제도로, 경합 등 최종 심의 시 반영 ※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정의에 따른 연령기준

○ 지원자격

① 화성시 거주(소재)자

※ 공고일 이전 기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상

② 아래에서 지정하는 예술인/단체

구 분	내 용
예술인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 만19세 이상의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2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문화관광체육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내 전문예술인의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비전문예술단체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등

※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항목 ① 과 ② 모두 만족하며, 지원불가 대상 및 지원불가 사업에 미해당 하는 자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전 경기도/화성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 지원방법

- 제출서류모두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 접수(artsupport@hcf.or.kr)
- 현장접수 지원: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2/2~2/3)
※ 현장접수의 경우 5일 전 사전 연락 필수

○ 신청 불가 대상

- 지원 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화성시 거주(소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공고일 이전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이거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선정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희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절차)

○ 신청 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목적한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중복신청 및 선정

- 당해연도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다른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예술인(또는 단체)은 (재)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인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예술창작 협업지원'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예술인지원팀 및 예술교육지원팀의 지원사업과는 관련 없음.

○ 지원자 신뢰 신청제도 운영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함.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4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영상자료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내 링크로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현장 접수 지원: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2/3~4)
 - 5일 전까지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기획지원_공연/시각/문학_지원자명(단체명)
- 창작활동지원_공연/시각/문학_지원자명(단체명)

- ※ PDF 파일(1장에 1면보기)로 제출 권장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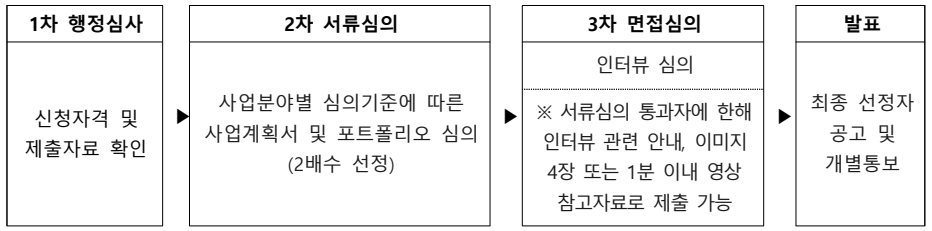
5 심의 및 평가

-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장르별 외부 전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2023년
심의 위원회	· 공연예술A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연희부문), 서커스, 다원 등)
	· 공연예술B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국악, 다원 등)
	· 시각예술A (회화, 설치, 조소, 공예/도예 등)
	· 시각예술B (사진, 미디어 아트, 영상/영화, 다원 등)
	· 문학부문 (소설, 시, 수필, 비평, 희곡 등)

※ 지원신청서 내 원하는 심의/평가위원회 기준 선택 가능(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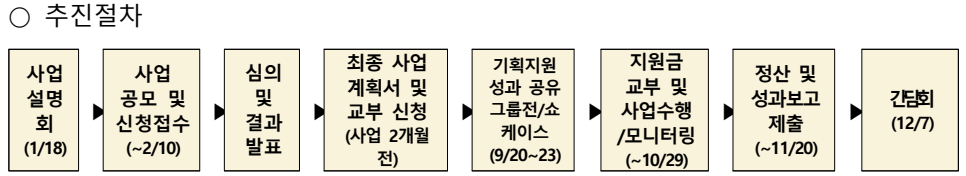
○ 심의절차



-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 미선정작에 따른 개별 통보 없음.
- ※ 문학부문의 경우 2차 서류심의로 최종 선정(면접심 의 없음).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우수사례 선정: 지원구분 및 예술장르별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차년도 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6 사업일정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일 정
공 고 일	2023. 1. 19.(목)
공 고 기 간	2023. 1. 19.(목)~1. 31.(화) (13일간)
접 수 기 간	2023. 2. 1.(수)~2. 12.(일) 14:00 (12일간)
서 류 심 의	2023. 2. 20.(월)~2. 21.(화) *서류심의 발표: 2. 24.(금) 18:00 예정
면 접 심 의	2023. 3. 8.(수)~3. 10.(금)

발 표	2023. 3. 17.(금) 18:00
사 업 운 영	2023. 4. 1.(토)~10. 29.(일) 까지 완료 필수
그 룹 전 / 쇼케 이스	2023. 9. 20.(수)~9. 23.(토)
정산서, 성과물 제출	2023. 11. 20.(월) 까지 제출 필수
간 담 회	2023. 12. 7.(목)

7 유의사항

- 기획지원, 창작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주세요. (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획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이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서 제시하는 수익금 기준에 따른 수익금 발생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사례비로 사용 가능)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기획지원: 수익금 미발생 권장
 - 창작활동지원: 화성시민 인당 5,000원 권고 또는 무료(할인 적용가격 가능)
- 최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_ 올해 '기획지원' 우수사례 선정자 ⇒ 차년도 '창작활동' 지원 시 가산점)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 주관: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필수).
- ※ '공연' 운영하는 경우 관객 초청 외에 사전 일반관객 모집(온라인 접수 또는 유선접수) 병행 필수
- ※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8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끝.